

영등포구의회
제164회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·내 점포 앞
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12. 1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朴 鍾 成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·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92호로 2011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.

나. 청결유지에 따른 적용대상 및 책임자 규정(안 제3조, 안 제4조).

다.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범위 지정 및 구민의 활동사항 등을 규정
(안 제5조, 안 제6조).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내 집·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대한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- 내 집·내 점포 앞 청결유지의 의무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음을 명시함(안 제4조).
- 청결유지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청결유지의 범위를 정함(안 제 5조).
- 구민은 청결유지를 위해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스스로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청결유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스스로 내 집·내 점포 앞 주변 청결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,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 시행

다. 타 자치구 조례 현황 : 성북구, 대전광역시 유성구

관 련 법 령

■ 폐기물관리법

제7조(국민의 책무)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, 폐기물의 감량화(減量化)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·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7.8.3>

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7.8.3>

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8.3>

③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7.8.3>

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

제5조(소유자 등에 대한조치명령) ①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소유자 등"이라 한다)에게 토지·건물의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.